

단기연수규정

제정 : 2011.07.30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.) 전임교원의 학문발전을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연수(이하 ‘연수’ 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1.03.01., 2021.12.01.>

제2조(자격)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제3조(연수의 종류) 단기 연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전문연수 : 교원의 전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수를 말한다.
2. 일반연수 : 교양 및 교원의 가치관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수를 말한다.
3. 산업체연수 : 하계방학을 이용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에 연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교원 임용평가의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.

제4조(기간) 연수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.

제5조(신청) ① 직무와 관련된 전문연수를 신청하는 교원은 1주일 이전에 출장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전공과 관련된 전문연수 및 산업체연수를 원하는 교원은 연수 개시 1개월 전까지 연수계획서(별첨1)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연수개시 1주일 전까지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6조(비용) 연수비용은 출장비 및 교육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수에 참가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사직원을 제출하여 1개월 이내에 퇴직이 결정된 교원 <개정 2014.11.01.>
2. 법인 정관 제40조 내지 제43조의4에 의거 휴직 중인 자 <개정 2014.11.01., 2021.

12.01.>

3. 징계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 <개정 2014.11.01.>

제8조(결과 제출) 연수종료 후 연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.<개정 2021.12.01.>

1. 전문연수 : 1주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한다.
2. 일반연수 : 진행부서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.
3. 산업체연수 : 1개월 이내에 산업체연수보고서[별첨2] 및 산업체현장이수증 [별첨3]을 제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(직무, 산업체) 연수 계획서

학 과		성 명	
직 급		생년월일	

산 업 체 명			
산업체 대표자명			
산 업 체 주 소			
산업체 대표전화		팩 스	
연 수 기 간	년 월 일 ~	년 월 일 (일간)
연수내용(예정) 날짜별 상세내역			

위와 같이 산업체 연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출자 : (인)

학과장 : (인)

대원대학교총장 귀하

[별첨 3]

산업체 현장 이수증

- 소속 : 대원대학교 과
- 직급 :
- 성명 :
- 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당사의 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 합니다.

- 아 래 -

- ▷ 연수일정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
- ▷ 연수기관(부서) :
- ▷ 주 소:
- ▷ 전화번호 :

20 년 월 일

담 당 자
(인)

주) 00000000000 (직인)